

■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Ex)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관개수로 · 발전(전기제외) · 댐 ·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간척 · 매립공사 등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업종	1좌당	자본금	C등급 이상	D등급
토목공사업	1,555,600원	5억원	117좌 (182,005,200원)	131좌 (203,783,6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